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 규정

규정번호 : 3-37
제 정 일 : 2023.11.24.
개 정 일 : 2024.04.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에 의거하여,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말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과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전공능력의 심화를 위하여 학위의 부여 없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③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 학부를 주관학부라고 하며, 2개 이상의 학부가 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관학부 외의 학부는 공동학부라고 한다.

제3조 (유형)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일형 과정 : 단일 주관학부의 전공 교과목 혹은 아테나 교양학부 교과목만으로 구성된 과정
2. 융합형 과정 : 2개 이상 학부의 전공 교과목간 연계 또는 전공 및 아테나 교양학부 교과목으로 구성된 과정

제4조 (위원회)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검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검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과정 설치)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부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1.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설치신청서
2.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계획서

② 교학처는 검정관리위원회에 해당 과정 설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를 허가 또는 반려한다.

③ 2항에 따라 설치가 허가된 경우라도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청학부는 주관학부가 되며, 기타 행정 관련 주관부서는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제6조 (과정 운영 및 폐지)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최초 설치 시부터 2년을 최소 운영 기간으로 한다.

② 주관학부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최초 설치 후 2년마다 운영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검정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존속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폐지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폐지한다.

④ 주관부서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과정 및 교과목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과정 구성 및 편성)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은 각 학부에 편성된 교육과정의 교과목 수 내에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최소 3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교양 교과목 단일형 : 6학점 이상 12학점 이내
2. 전공 교과목 단일형 : 9학점 이상 12학점 이내
3. 융합형 : 9학점 이상 12학점 이내

③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이나 실습 등에 대한 요건을 둘 수 있다.

제8조 (과정 이수)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해당 개별과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설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한 교과목으로 보며,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2. 시간제 등록생
3.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방문학생 (개정 2024.4.12.)

③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이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총 이수학점과 중복으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⑤ 기 졸업생이 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에는, 본교 재학중 기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해당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제9조 (이수 중단 사후 처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수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졸업사정 또는 마이크리디그리 과정의 운영 종료 전까지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사정 전까지 이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마이크로전공) ①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중 1가지를 소정의 기간 내에 마이크로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10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 단일형 혹은 융합형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한한다.

② 마이크로전공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시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 졸업예정자

3. 주전공이나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 학부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주관 혹은 공동학부가 같지 않은 자

③ 마이크로전공 심사는 교학처장을 거쳐,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졸업사정에서 탈락하면 마이크로전공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 승인된 마이크로전공은 졸업 시 학위증과 졸업증명서에 병기하며, 성적증명서에 이수내역을 별도로 표기한다.

⑤ 기타 졸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졸업사정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개정)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